
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

제정 2012. 2. 17

개정 2012. 5. 2

개정 2013. 5. 28

개정 2014.10.31

개정 2015. 4.30

개정 2016. 8.16

1. 목적

금융투자업규정 제 3-7조에 따라 유진투자선물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지급대상

- (1)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
단, 현금예탁필요액은 제외한다.

3. 이용료율

- (1) 원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: **연 0.25%(원미만 절사)**
(2) 외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: 연 0.0%

4. 지급기준

- (1) 예탁금이용료는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100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한다.
(2) 전분기의 지급일부터 금번 지급일 전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다.

5. 지급일

- (1) 정기지급
매 분기 초에 해당되는 월(1월, 4월, 7월,10월)의 두번째 일요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. (단,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顺延한다)
(2) 수시지급
계좌 폐쇄시에는 폐쇄일에 지급한다.

6. 개별적용

본 지급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 및 지급방법을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이상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7. 시행일

2016년 8월 16일부터 적용한다.